

# 「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「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2. 28.
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## 1 사업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사업명	■ 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
지원대상	■ 만60세~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
접수기간	■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
선정방법	■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(선착순) ○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
지원내용	■ 신규 채용(재연장)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○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: 90만원(3개월) × 4회 ○ 지원기간 : 2023. 12. 31.까지(2024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) ○ 지급방법 : 법인기업(법인계좌), 개인기업(대표계좌) -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. 예시) ① 3월 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: 2023. 4. 1. ~ 2023. 6. 30.(6. 30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 ② 4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: 2023. 5. 1. ~ 2023. 7. 31.(7. 31.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) -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- 2회차부터는 퇴사, 관외이전(기업, 개인),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-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- 잔여분은 2024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
지원한도	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○ 고용보험상 취득일(제출일 기준)이 1년 이상되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% 이내(소수점 이하 올림) ○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

### □ 기본요건 \*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기업

구 분	주 요 내 용
중 소 제 조 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소 재 지)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(공장)이 소재</li> <li>▪ (기업형태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)</li> <li>▪ (영위업종)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(500㎡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</li> </ul> </li> <li>▪ (고용기준) 만60세~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3년 기준 1958. 1. 1. ~ 1962. 12. 31.에 해당되는 근로자</li> </ul> </li> </ul>
해 당 근 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거 주 지)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</li> <li>▪ (채용유형) 아래의 조건을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</li> <li>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: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</li> <li>※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(만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)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.(단,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정부(지자체 포함)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
  - 해당 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
- 예시)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, 일자리안정자금, 고령자고용지원금, 고용장려금(고용유지 지원금, 고용촉진(창출)장려금,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(사업주)이 지원 받는 제도) 등 \* 단,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

※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시 일모아시스템에서 가입 및 도입여부 확인

- 특수 관계자 제외
  - 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, 인척
  -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,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
- (기업)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/ (근로자)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
- 임원 제외 (단,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)
-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,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.

예시)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

-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
-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

## □ 고용유지 확인

-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
  -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 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 시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어 **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(50%) 환수**.
  - \*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

##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

### □ 추진절차



- (자격심사)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
  - **접수사이트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**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
    - 기업지원 ▶ 기업지원사업신청 ▶ 지원분야(인력선택) ▶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

### □ 제출서류(온라인 신청)

구 분	제 출 서 류
중 소 제 조 기 업 (사 업 장)	① 참여신청서 및 협약서, 기업정보이용동의서,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 확인)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기준 7일 이내) ⑥ 만60세 이후 2년 이상 근로계약서(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지) ⑦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서(금융기관발행) /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협약서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)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
해 당 근 로 자	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(신청일 기준 7일 이내)

**□ 제출서류(지원금 지급) \* 1~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**

-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.
-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온/오프라인으로 제출(이메일, 방문 등)

구 분	제 출 서 류
<b>지 원 금 지 급 신 청</b>	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기업용, 신청일 기준 7일 이내) ③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증(금융기관발행 / 제출일기준 3개월분)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(제출일기준 7일 이내 /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※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(근로자 중도퇴사, 근로종료 등 포함) 제출하며,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가 타시로의 이전이 확인되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.              ※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</div>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(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)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

**4 문의 및 상담**

- 문의처 : 인천테크노파크 **고용안정센터**
- ☎ 전화 **032-725-3032** / 이메일 **hgkim@itp.or.kr**